

서울특별시 성북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행정기획위원회(청소행정과)

의안번호	제253호
제 출 자	고영옥 의원 외 11명(2024. 2. 1.)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전문위원 정진만

1. 제안이유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존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시행 2024. 1. 1) 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변경하고, 삭제된 조항을 정리하여 조례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조문 정비(안 제1조)

나.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변경
(안 제4조)

다.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변경(안 제7조)

라. 제6조,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순환
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입법예고 : 2024. 2. 2. ~ 2024. 2. 6.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성북구 자원순환체계 점검 및 시민 참여형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 정윤주 의원)의 활동 결과에 따라 고영옥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 2022년 12월 31일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시행 2024. 1. 1.] [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변경하고, 기 삭제된 조항을 정리하여 조례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본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 목적¹⁾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변경함.
- 안 제7조에서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개정하였으며,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기본법」, 「제품의 포장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폐기물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6조,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를 삭제하였음.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존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자원순환기본법」이 생산·소비·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우리구조례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 삭제된 조항을 정리하여 조례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성북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기본법」,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폐기물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안의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1. ~ 5. (생략)

제3조(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매년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자금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참여하는 재활용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재활용의 촉진

진법」 제5조에 따른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
----- 자원순환
을 촉진할 -----.

② ----- 자원순환의 촉진-----

-----.

1. ~ 5. (현행과 같음)

제4조(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자원순환시행계획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자금 등의 지원) ① -----
- 법 제31조제1항-----

----- 자원순환촉진-----

-----.

② ----- 자원순환 -----

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
<u>제5조 (생 략)</u>	<u>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u>
<u>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구 청장은 「자원재활용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u>	<u>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구 청장은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u>
	<u>부 칙</u>
	<u>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u>제8조(삭제 2000.12.30.)</u>	<u><삭 제></u>
<u>제9조(삭제 2020.12.31.)</u>	<u><삭 제></u>
<u>제10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u>	<u><삭 제></u>
<u>제11조(삭제 2020.12.31.)</u>	<u><삭 제></u>
<u>제12조(삭제 2020.12.31.)</u>	<u><삭 제></u>
<u>제13조(삭제 2020.12.31.)</u>	<u><삭 제></u>
<u>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u><삭 제></u>

